

한 종 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행정학 석사

hjh2333a@korea.kr



농장동물복지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1. 농장동물복지의 개요

동물복지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인식해야 할 사항은 「동물은 감정과 지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이며, 이런 바탕에서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생



겨나게 되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명되고 있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좋은 동물복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과 수의학적 처치, 적절한 축사, 관리, 영양, 인도적인 취급과 도축·살처분을 요구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정법으로 입법하여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각국은 종교·문화·관습 등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조금씩 달리 하고 있어, 각국의 실정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법규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동물보호는 주로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들어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EU를 비롯한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농장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여러가지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하여 농장에서 사육과정과 운송뿐 아니라 도축 및 살처분 과정에서도 동물복지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장동물복지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최근 농장동물 복지는 인간을 위한 높은 수준의 환경과 식품의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대다수 국민들이 점차 인식하고 있어, 우리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인증·표시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 도축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식품에 동물복지 축산식품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농장동물(Farm Animal)은 보통, 가축, 산업 또는 경제동물이라고 불리며,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의 범주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2. 농장동물복지의 중요성

지금까지 축산은 인류에게 고급식품을 값싸게 공급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동물의 입장이 아닌 인간중심의 효율성 위주로 개발되면서 케이지에서 산란계 사육, 좁은 송아지 사육실, 모돈의 스톨내 사육 등 집약적 축산이 일반화 되었다. 이에따라 동물복지 수준은 저하되고, 가축의 질병발생 및 전염 가능성의 증가와 더불어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항생제 과다사용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환경,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건강·환경·식품안전성의 모두에 부합되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축종별/분야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2012년부터 산란계에서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는 모돈의 스톨을 사육금지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동물복지는 생축을 비롯하여 식육, 유·육가공품 및 모피와 같은 축산생산물의 교역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축산생산물이 아닌 경우는 국제교역에 있어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5월에 우리원에서 한국궐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상당수(72.3%)는 쾌적한 상태에서 생산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구입의사를 보여, 농장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다수(93.7%)는 축산물의 구입시 사육환경과 사육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여 축산물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품질·안전성·동물복지를 내세우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수입에 대비하고, 우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과 환경 및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기반구축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농장동물복지 관련 현황 및 국내제도

가. 동물복지형 축산현황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표시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조례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복지 농장인증·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인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을 살펴보면

안성시는 ‘안성맞춤형 동물복지 농장인증(2008년 7월)’을 통하여 안성맞춤형 동물복지 농장인증 기준에 따라 사육·관리되는 농장에 ‘안성맞춤형 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고 해당농장 및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국동물행동복지센터의 경우는 영국의 Freedom food에 적용되는 RSPCA 농장동물 복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농가가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는 율가에서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환경, 축산경영, 건강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2007년 7월)하여 복지기준에 충족한 농가에 대해 동물복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율가제품에 대해 ‘율가동물복지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전라남도에서 FTA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마련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 국내제도

1) 동물보호·복지(동물보호법)

2008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모든 포유류 및 조류를 대상동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가축이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보호법상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육하는 가축에게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 및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의 보장과 질병 및 부상의 경우 신속한 치료 및 조치 등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가축에게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거나 도축장 등으로 운송시 안전한 운전 및 동물에게 적합한 구조의 운송차량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 가축의 도살방법은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사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또는 가스법, 약물투여 방법으로 기절없이 죽여야 하며,
- 가축을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시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하위규정인 ‘동물운송 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65호)’ 고시를 통하여 운송에 적합한 동물의 선발, 운송밀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을 하여서는 안 되는 동물은 아프거나, 부상중이거나, 상처가 크거나 탈장한 동물,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이내에 출산한 동물 등이며, 단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한 실험 대상 동물 또는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동물은 제외된다.

동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밀도는 축종별/체중별로 운송 소요면적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제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하여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 동물약품 첨가 금지 등 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축산업 등록자로서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 생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유지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제
 -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근거하여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해요소를 중점관리 하는 농장에 대하여 지정하는 제도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하며 이용하는 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제도
- 축산업등록제
 - ‘축산법’에 근거하여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차원에서 일정규모의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는 제도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오리는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농가는 등록하여야 함.

3) 관행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의 세부사항 비교

구분	관행축산	동물복지축산	유기축산
사육형태	밀집사육 격리사육	개방사육 군사 원칙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축사 시설	소	운동장(방목지) 부재	넓은 운동장(방목지) 필수
	돼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육 임신스틀 사용	콘크리트 바닥 금지 임신스틀 금지
	닭	배터리 케이지(산란계)	평사 사육
동물육종	인공수정 (소, 돼지 등)	인공수정 가능	인공수정을 허용하지만, 자연교배 권장
	고능력 가축 생산을 위한수정란 이식 권장 (소)		수정란 이식 금지
사료 급여	제한급여	자유급여 권장	자유급여
	공장생산 농후사료 및 조사료 급여 (잔반 등 부산물 이용)	공장생산 농후사료 및 조사료 급여 가능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후 사료 및 조사료만 급여
질병관리	백신 사용 가능	백신 사용 가능	백신 사용 불가 질병감염시, 자연치료요법(민간요법) 권장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과다 사용 운송동물의 건강, 임신여부 감안 의식 부재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사용 불가 건강상 문제있거나 임신중인 개체 배제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운송	최대한의 수송밀도로운반 및 이에 따른 이윤 창출 추구	동물 종별 운송밀도 규정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운송거리에 따른 급여규정 부재	운송거리에 따라 사료및 음수의 급여의무 규정	
도축	기후 등이 고려되지 않은운동장 형태의 계류장	계류장의 지붕시설 필수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짧은 계류시간	운송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계류 시간 확보	
	일부 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 의식 있는 상태하의 도축	모든 동물의 기절 후도축(방혈) 시행	
라벨	일반판매 또는 지자체 품질보증과 같은 소수의 특수마크 부착	동물복지축산물 인증마크 부착 및 고부가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 - 영국 : RSPCA의 freedom free 마크 - 미국 : AHA (쇠고기),NPPC(돼지고기)	유기축산물 인증마크

4. 농장동물복지 관련 국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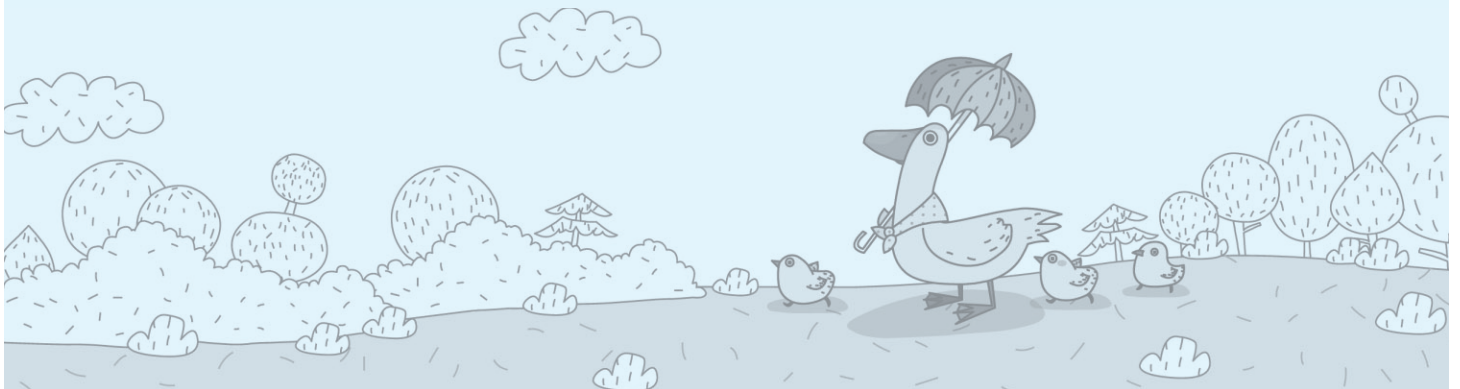
1)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舊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근 동물복지를 6대 주요업무(국제 동물보건 현황의 투명성 보장, 수의과학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동물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의 제공 및 국제적 협력, 동물 및 동물생산물의 국제무역을 위한 보건기준 공포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보호, 국가 수의서비스의 법적구조 및 자원의 제공, 동물복지 기본원리 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조력)에 포함시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농장동물복지지침을 제정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정된 분야별 동물복지지침은 '가축의 육상·해상·항공운송, 식용을 위한 가축의 도축, 질병관리 목적의 살처분, 유기견의 개체수 조절' 등 6개 분야이다. 또한 가축의 생산시스템, 실험동물, 양식어류, 전시동물(동물원) 등의 분야에 대한 동물복지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

가축생산시스템에 대한 복지기준의 경우, OIE는 육우 및 육계 분야를 우선 개발대상으로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지침 초안이 개발되어 검토 중에 있다.

돼지 생산시스템에 대한 복지기준은 현재 동물복지 전문가위원회(ad hoc group)에서 초안개발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초안에 대한 검토를 회원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OIE 운송 · 도축 · 살처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운송	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동물 종에 따라 운송시간이 길어질 경우 휴식 필수 - 운송과정에 멀미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은 짧은 기간의 절식 필요 - 차량 정차시에도 환기시스템의 지속적인 동작 - 동물종의 자세에 따라 높거나 서있는 동물에 대한 상대적 공간 확보 필수 - 운송된 동물의 수입허가가 반려된 경우, 수입국은 운송동물이 차량으로부터 하역하여 안전하게 계류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명시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간이 넘는 운송일 경우, 물과 사료 공급시설 필요 - 벽면적의 16% 이상의 환기구 필요 - 다루기 힘든 동물, 임신말기의 동물은 항공운송 금지 - 동물의 밀집도등 기타 사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협의에 따름
	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천후를 비롯한 비상사태의 관리 및 처리에 적합한 동물관리자 필수 - 수입국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필수 - 서로 다른 동물종의 혼합 운송 금지 - 운송된 동물이 수입국에서 수입허가가 반려된 경우, OIE 지정 수의사의 동물상태에 대한 평가 실시 및 분쟁 지속 시 OIE에 중재 요청 - 수입국 항구에 도착한 운송선 위에서 동물이 장기적으로 하역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에서 부족분의 사료와 음수를 공급할 책무 명시
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시간이 길어질 경우, 계류장에서 사료 및 물 급여 필수 - 젓소와 같은 포유 중인 동물은, 젓분비로 인한 유통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선순위로 도축하여야 하며, 도축이 늦어질 경우 인공적으로 젓을 짜주어야 함 - 상업적인 도축 시, 태아가 발견될 경우 태아의 소생을 위한 시도 금지 - 전기적 또는 충격(타격)을 통한 전살의 경우 20초 이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전살의 경우 60초 이내 방혈이 이루어져야 함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은 경험많은 특별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팀장, 수의사, 동물취급자, 동물 살처분 담당, 도체폐기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은 중?대동물은 총살, 관통 및 비관통 캡티브볼트(가축총)를 이용하고, 가금류 및 소동물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마취를 이용 - 대단위의 가금류의 경우 사료나 음수에 마취제를 섞어 공급하는 것도 가능

2) EU

EU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장동물 복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가축의 밀집사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토대로 EU는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다른 나라에 앞서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축종별 법령을 각각 제정할 정도 세분화 하여 시행중이다.

동물복지의 경우, 가축의 사육, 운송(운송시 동물복지, 동물운송용 차량기준, 차량의 환기시스템, 동물 휴식장소), 도축 및 살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3) 일본

우리나라와 지리적·기후적·사회적·문화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지침의 개발을 위하여 (사)축산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학계,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돼지'와 '산란계'를 우선 개발 축종으로 선정, 2007년부터 초안 개발을 준비하여 2009년 3월에 지침 최종안을 개발하여 보급·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육계 및 젖소에 대한 지침을 개발 중이며, 이후 육우와 말에 대하여 지침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5. 동물복지 국내 정책방향

1) 동물복지 지침의 개발 및 시행

국제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OIE의 동물복지지침에 기반을 두면서 국내 실정을 감안한 국내 동물복지 지침의 개발 및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원은 2008년 및 2009년에 걸쳐, 도축장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도축시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정부, 학계,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운송 및 도축분야에 대한 지침을 개발 중이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 사육시스템에 대한 복지기준의 개발에 대응하여, 국내 돼지사육시 복지지침의 개발도 차후 개발할 예정이다.

2)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 계획

앞에서 언급한 동물복지 지침은 국내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권고사항), 이와는 별도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실사를 통하여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인증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 및 도축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식품에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의 도입도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다.

현재, 몇몇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된 가축의 생산물에 특정 상품명 및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농가와 업체 모두 민간인증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동물복지형 축산인증·표시제를 선호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을 구별·선택할 수 있어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의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동물복지 증진과 더불어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따라 현재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과정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원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신규 제도들이 운용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운용상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 하반기중으로 동물복지형 농장동물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동물복지 관련 연구의 활성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복지를 포함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을 제·개정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이 규약의 제·개정을 요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제·개정시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지침의 제·개정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이 하루빨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원이 주관하는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은 물론 기타 연구사업에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활발한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4) 동물복지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우리나라 축산의 경우 규모화·계열화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좁은 국토여건 등 여러가지 한계로 인하여 이른바 공장화된 밀집축산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는 가축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품질저하와 전염성 질병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과다사용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농장동물복지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농장동물복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운송자 및 도축업체 종사자 등은 물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을 넓혀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